

##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

### 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5타경52569 부동산강제경매			매각 물건번호	2	작성 일자	2026. 2. 10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최송이	<u>전자서명완료</u>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	별지 기재와 같음		최선순위 설정	2025.06.10.경매개시결정		배당요구종기	2025. 8. 29.	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	
점유자 성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분	점유의 권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 증 금	차 임	전입신고일자· 외국인등록(체 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 등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	
최대영	101호 전부	현황조사	주거 임차인	미상	미상	미상	2025.04.23.	미상		
	101호 전부	권리신고	주거 임차인	2018.04.23.- 2026.04.23.	65,000,000		2025.04.23.	2018.04.12.	2025.8.28.	
<p>&lt;비고&gt;                      최대영:2018. 4. 25. 본건 목적물에 전입하였다가 전출하고, 2025. 4. 23.에 재전입함.</p> <p>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</p> <p>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</p> <p>비고란</p>										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
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## 부동산의 표시

2025타경52569

[물건 2]

2. 1동의 건물의 표시

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747

[도로명주소]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5길 13-12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1층101호

조적조

36.86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747

대 243.8㎡

대지권의종류 : 1. 소유권

대지권의비율 : 1. 243.8분의 17.4319

감정평가액		79,000,000	
회차	기 일	최저매각가격	매수신청보증금
1회	2026.03.12	79,000,000	7,900,000
2회	2026.04.23	55,300,000	5,530,000
3회	2026.06.04	38,710,000	3,871,000
4회	2026.07.16	27,097,000	2,709,700